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년 3월 일

발 의 자 : 금광연 의원

1. 제안이유

- 하남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안식월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직무 효율성 향상 및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5년 이상 근무 공무원에 대한 안식월 휴가 신설(안 제27조제22항)

-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 합산 근무기간 15년 이상 공무원 대상
- 1회에 한하여 연속 30일(토요일·공휴일 포함)의 유급 안식월휴가 부여

나. 안식월 휴가의 기준 및 절차 규정

- 재직기간 산정 기준 및 제외·예외 사항 명시
- 퇴직 전 사용기한 설정(원칙: 퇴직 2년 전, 예외: 명예퇴직 3개월 전)
- 휴가 신청 절차 및 부서장의 조정 권한 규정

3. 검토의견

▶ 제27조제22항 <신설>

가. 입법 필요성

-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충전 기회 제공은 조직의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근무환경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휴가제도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현행 조례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휴가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있음.

나. 입법 적정성

- 본 개정안은 일정 기간(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한정하여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 휴가 사용 시기를 퇴직 전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고, 사전 신청 및 부서장의 조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부서장이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행정 운영상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 법적 타당성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 특별휴가의 신설은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으로 가능하며, 본 안식월 휴가 제도는 복지적 성격의 제도로서 법령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장기 유급휴가 부여에 따른 재정적·인력 운영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으로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며, 휴가 부여 기준, 사용 제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 운영의 균형을 고려한 점에서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됨.
- 다만, 안식월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 운영 방안과 부서 간 형평성 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